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3나16914 대여금
원고, 피항소인 원고
피고, 항소인 피고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
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. 9. 12. 선고 2012가단10377 판결
변 론 종 결 2014. 5. 22.
판 결 선 고 2014. 6. 19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9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0. 9. 27.경 피고에게 3,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3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호증(차용증서)이 있으므로, 위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먼저 본다.

피고의 부(父) ○○○가 2012. 9. 20. 피고의 명의로 작성된 '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(이 사건 기록 31쪽)'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, 이후 2012. 9. 27. 열린 제1심의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은 후 위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

그러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2. 8. 31. 위 ○○○이 송달받고, 위 1차 변론기일의 통지서도 피고의 모(母)이자 제1심 공동피고의 지위에 있었던 □□□이 송달받은 사실, ○○○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□□□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 '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'을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, 피고는 2013. 5. 14. 열린 제1심 법원의 조정기일에 앞서 ○○○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

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고, 이후 위 조정기일에 참석하면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여하게 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당심 증인 ○○○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위 장원식이 위 차용증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한 것은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,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, 위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할 것이다.

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대하여 보건대,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기현

 판사 홍은아

 판사 이기홍